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40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6. 27.
3. 회 부 일 : 2025. 6.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업 중 학습 집중 유도, 휴대전화 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117건이던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는 2024년 281건으로 2.4배 증가하였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를 신설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교원의 면책)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¹⁾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한 범죄 행위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2020년 1,197건, 2023년 5,050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4년에는 816건 감소하였으나 4,234건 수준으로 나타남.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활동 침해 건수	1,197	2,269	3,035	5,050	4,234

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
자료: 교육부

한편,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1)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함(「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관련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지위법」 제1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한 다음의 행위 - 범죄 행위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학생(「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	보호자 등(「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	기타(「교원지위법」 제20조제4항)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진학 - 퇴학처분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교원이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은 소송 수행 등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개정안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경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한 교원은 불필요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이에 따르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며, 교원이 준수하여야 할 학생생활지도 관련 현행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은 학생생활지도를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학생생활지도 분야로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방법으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을 각각 규정하면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음.

그리고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해당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 등은 학칙에서 규정함.

참고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는 해당 고시에 의한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²⁾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2025.2., p.25

「형법」 제20조(정당행위)³⁾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고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학생생활지도는 형사상 면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민법」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아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면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특정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교원의 면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에 정당한 유아생

3)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4)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는,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 교육감이 판단하고, 이후 수사·재판 절차에서 수사기관·법원이 판단하고 있음.

활지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교원지위법」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규정하고,⁵⁾ 이를 대상으로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생활지도에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⁶⁾

5) 「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교원지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원지위법」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할 경우 학생생활지도와 함께 유아생활지도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유아생활지도 관련 조항]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u>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u>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유아생활지도"란 유치원의 장(특수학교의 장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기타)	원장은 이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셋째, 학생생활지도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면책 조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령에서 학생생활지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형사상 면책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⁷⁾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초·중등교육법」의 체계를 따르고 있음.

개정안은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령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⁸⁾

7)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는 각각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등으로, 금지행위를 행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아 형사상 면책이 적용됨.

8) 참고로 학생생활지도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2026.3.1.부터 개정조항으로 적용됨.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0862호, 2025.4.1. 개정, 2026.3.1. 시행)

현행	개정(법률 제20862호, 2025.4.1. 개정, 2026.3.1. 시행)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u>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u>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u>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⑥ 생략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이 경우 유아생활지도와 관련한 민·형사상 면책 조항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내용과 형사상 면책 근거가 규정된 「유아교육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이외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면책 조항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3항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또한 학생생활지도 외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원 면책 관련 조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 등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함. - 다만 개정안은 초·중등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치원 교원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위해 근거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개정안</th><th>수정안</th></tr> </thead> <tbody> <tr> <td>제20조의2(교원의 면책)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td><td>제20조의2(교원의 면책) 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td></tr> </tbody> </table>	개정안	수정안	제20조의2(교원의 면책)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의2(교원의 면책) 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안	수정안				
제20조의2(교원의 면책)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의2(교원의 면책) 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교육청: 일부수정 - 유치원 교원에게 초·중등교원과 동일하게 개정안의 면책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근거조항을(「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 신중검토 -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정당성 여부에 대한 기관의 의견 편차가 있으며, 교원이 해당 면책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 지도’에 해당한다는 자의적 판단하에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이 부정당할 가능성 있음. - 교원의 정당한 지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부득이 면책조항을 두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여 면책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9